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호 1276 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 이유

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촉위원을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
 으로 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○ 조례안의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(안 제5조제4항제2호).
- 나.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.
- 다.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4항제2호 중 "공예품 또는 농·수·축·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"을 "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"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 중 "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"을 "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5조(구성 등) ①~③ (생 략)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서울시의회 의원 2. <u>공예품 또는 농·수·축·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</u> 3.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.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(생 략)	제5조(구성 등) ①~③ (제정안과 같음) ④
제8조(수당 등) (생 략) < <u><신 설></u>	제8조(수당 등) ① (제정안 제목 외의부분과 같음)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제10조(입상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서</u> 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 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~4. (생 략)	제10조(입상자에 대한 지원) <u>서</u> 울특별시 관광기념품

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 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관광기념품"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 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시책과 사업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광기념품의 개발·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다.
 - 1. 관광기념품 개발 ·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
 - 2.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
 - 3.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
 - 4.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
 - 5.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제5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,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 -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서울시의회 의원
 - 2.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
 - 3.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
 - 4.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
 -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.

- 1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2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3.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제8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9조(경진대회 등의 개최)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,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 - 1.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
 - 2.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
 - 3.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
 -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 -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0조(입상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

- 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
- 2.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
- 3.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
- 4.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)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·제작·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평가기관)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3조(지정 신청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 획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14조(지정 고시와 통지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정 효력)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-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,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지정 해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·폐업·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
 - 2.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
 -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,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)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·홍보·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제19조(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)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
 - 2.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
 - 3.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
 - 4. 특허 출원,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
 - 5.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0조(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)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
 - 2.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
 - 3. 각종 국내외 박람회, 전시회,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
 - 4. 각종 전시·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
 - 5.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
 - 6.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2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

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2조(표창)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 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관·단체·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